

#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제2조)

- 기준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록·공표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제3조)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환경과장, 건설과장
- 민간인 위원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회의(제5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간사 및 수당(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주사가 됨
- 위원회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규제신고센터의 설치(제8조)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도기획11250-10346, '98.9.25)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대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행정규제 일제정비는 그 동안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온 조례, 규칙은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할 것이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해 제정되는 거창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과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향후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한 정비가 되도록 본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강신봉 위원)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본 위원회에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 답변(기획감사실장)

°본 위원회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이전에는 행정지시에 의하여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규제 정비 업무를 대행하여 왔으나, 향후 본 조례에 따라 운영할 계획임.

- 질의(이문행 위원)

°경상남도 표준안 제7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 신고센터를 둔다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제정안 제7조는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로 한 이유는?

- 답변(기획감사실장)

°도 표준안 제7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 시달되어 도 준칙과 같은 내용을 제정하였음

○ 질의(최영웅 위원)

°경상남도 표준안 제3조에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15인 이내로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제정한 이유는?

○ 답변(기획감사실장)

°당초 경상남도 표준안도 방금 지적하신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1차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로 추후 개정 시달됨에 따라 도 표준안과 같이 제정하였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과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해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음

○ 나. 반대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하고, '99년도를 행정규제 일체정비에 중점을 두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3항의 근거에 의해 제정되는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본 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억제는 물론,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심사기구로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위법과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거,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됨
- 다만,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심사요구된 조례안은 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의회의결을 구하는 것이 절차상 옳은 것으로 생각되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시에 의해 “규제개혁협의회”에서 행정규제 업무를 대행하였다 하나,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8. 소수의견 요지

- 이번 회기 내에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 상정되는 개정이나 폐지 조례안은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Cost Less)으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

나. 주요골자

○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을 군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설치(제6조)
- 수탁기관 선정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제9조)
- 수탁기관의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시 및 조치와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제10조, 제12조)
-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5조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사무민간위탁 제정조례 표준안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의 근거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을 뿐 아니라,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사고예방이나 시행착오만 없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전현옥 간사)
  - °본 조례안 제4조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제12조에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규칙에서 정할 계획은 없는지,
- 답변(내무과장)
  - °거창군은 99 ~ 2001년도까지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수도사업소를 용역을 주고, 2000년도에는 시설관리분야인 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2001년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과, 쓰레기매립장 등 7개 사무를 수탁 대상사무로

정하고 현재 수도사업소는 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는 해당 부서별로 상세하게 규칙에 정하도록 할 계획임

○ 질의(손판준 위원)

°본 조례안 제6조 4항에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할 경우 업무의 지속성과 빈번한 위원회 위촉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 답변(내무과장)

°수탁기관 대상 사무 성질에 따라 그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제6조 4항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 질의(최영웅 위원)

°거창군에서 99 ~ 2001년까지 7개 수탁사무는 자치사무인지, 그리고 이에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선정의 공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 답변(내무과장)

°7개 수탁사무는 모두 자치사무이며,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들도 감수할 것으로 보며, 선정할 때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5. 토론요지

○ 가. 찬성

°지방자치법 제95조 1 ~ 4항과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행자부 표준안의 근거에 의해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임

○ 나. 반대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정부는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이미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중복 유사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자치단체의 조직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추진은 각종 신규투자로 인한 공공시설의 관리기능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 절감 가능업무나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제공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무의 간소화는 물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로 하여 거창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로 공무원들의 동요나 사기저하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제10조, 지휘감독과 제12조 처리사항 감사로, 수탁기관으로부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 사항을 규칙에서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폐지사유

○ 호적법 제1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법률위임근거가 없는 등 거창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 3. 검토의견

○ 호적법 제132조 2,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85년 5월 31일 제정 당

시에도 법률 위임 근거도 없이 시달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임영선 위원)

°본 조례가 '85년 5월 30일 제정 당시 법령 위임근거도 없는데도 제정된 이유는?

○ 답변(내무과장)

°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위임 근거도 없이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해 '85년 5월 30일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게 됨.

#### 5. 토론요지

○ 가. 찬성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기간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전체 위원 의견임

○ 나. 반대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호적법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근거를 두고 내무부 준칙에 따라 1985년 5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되지 않았고, 호적과태료 징수는 상위법인 호적법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됨.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업무 일체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폐지(안 제5조 제3항)

○ 공유재산 사용허가 표지부착 의무 폐지(안 제13조 제6호)

○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한다.

○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 규정 폐지(안 제46조)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88년 2월 24일 제정되어 그 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나,
- 본 조례 내용 중 일부가 일방적인 관 주도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제5조 3항, 제13조 6항, 제45조, 제46조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규제나 위임권 남용,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행정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손판준 위원)
  - °기존 조례 제45조 7호, 청사 주변에 공원화 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을 삭제하여도 문제는 없는지?
- 답변(재무과장)
  - °건축법과 설계서상에 되어 있으므로 별도 조례상의 규정은 제외시켜도 문제는 없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일방적인 관 주도로 군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으로 과감히 정비되어야 하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 시행하자는 전체 위원 의견이었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198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6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 본 조례 내용 가운데 일방적인 관 주도적 행정규제로 그 동안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항들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와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됨.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삭제.
- 수입증지는 지정된 판매인에게 증지액면 정액(액면가액의 95%)으로 판매한 후 판매인의 책임으로 관리되고 있음
- 판매인에게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장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입증지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장부검사 조항 삭제(개정안 제27조)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수입증지조례는 71년 7월 14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1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 본 조례 제27조는 수입증지 판매업자나, 이를 지도하는 공무원들도 이행치 않고, 오히려 불편만 제공되고 있어, 이번 행정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이를 삭제하여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행정규제 제2차 정비계획에 의하여 조례 제27조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별지 6호 서식과 함께 삭제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는 71년 7월 14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 수불장부 기록과 이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판단되어 제27조를 삭제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됨.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개정이유

-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 삭제
-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청취소시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나. 주요골자

○ 제6조 조제목 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 6조 본문

°현 행 : 기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함

°개정안 :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71년 1월 5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25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 본 조례 제6조 “수수료 불반환 내용이 일방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그 동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판단, 이번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오임수 위원)  
°제6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기 납부된 수수료 반납 관계로 민원과 마찰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는?
- 답변(재무과장)  
°과거 민원서류에 증지를 첨부하여 소인을 날인할 때는 반환된다 하더라도 민원인의 재사용이 불가하였고, 다소 민원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와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인 관 주도 사항을 군민 본의로 내용을 개정, 시행하자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었음
- 나. 반대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관 주도 적 행정 규제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것을 이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민원처리 기간중 신청 사항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은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됨.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폐지이유

○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거창군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93년 6월 22일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 본 조례는 제정 당시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고, 다만, 표준 준칙안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번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조성재 위원장)
  - °과태료 부과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답변(사회복지과장)
  - °위생용품 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 7개 항목이 있습니다.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었고,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규제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폐지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임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거창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과 준칙안에 따라 93년 6월 22일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규제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됨.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거창군공설시장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준수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 시장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장사용권을 상속 받았을 때의 신고와, 시장 사용권 양도 전대시 허가사항을 폐지하고,
- 이와 관련하여 시장사용권을 허가 없이 양도 전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설시장 관리에 있어, 그 관리규정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은 있음.
- 군의 재산이자 공중이용시설인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삭제할 시 시장의 질서유지와 사용수익권이란 재산권의 분쟁발생이 우려됨.
- 시장 사용권을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받은 자가 시장을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되는 결과 초래 예상.
-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을 시, 시장관리의 모든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읍·면장 또는 시장관리인에게 관리권을 위임하여 시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몇 군데나 되나?
- 답변 : 현재 위천, 가조, 신원시장을 관리하고 있음
- 질의 : 시장사용권에 대한 분쟁 발생시 어떻게 조치하나?
- 답변 :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시장의 관리는 위천시장의 경우 월 1만 원, 신원시장의 경우 월 5천 원씩 받고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사용권에 대한 분쟁발생은 없고, 본 조례 제 5조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함.

- 질의 : 본 개정조례안대로 신고의무등을 폐지해도 시장관리  
의 질서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없는가?
- 답변 : 질서유지관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개정조례안대로 시행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  
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함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관리 조례  
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
  
- 본 조례에서 규정한 신고사항의 폐지시 시장의 질서유지 관  
리나 시장사용권이라는 재산권의 분쟁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 제기되었으나, 기존의 조례규정으로도 원만한 시  
장관리가 가능하다는 제안자의 의견에 따라 원안과 같이 심  
사 가결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 창 군 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본 조례의 모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민영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규정 신고사항 등이 폐지되어 본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민영주차장 정의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안 제2조)
-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안 제3조)
-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하여 표시토록 규정(안 제5조)
- 민영주차장을 군수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설치 후 군수에게 통보만 하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조항 폐지(안 제1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으로 적절하며, 하자 없음
- 관련조례인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개정되어야 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민영주차장의 요금등 신고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율화되어도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가?
- 답변 : 현재에도 자율화된 상태이고 큰 문제점은 없음.
- 질의 : 분쟁이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며, 군에서 민영주차장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답변 : 현행 주차장법에 민영주차장에 대한 시설 등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가능함..
- 질의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조례는 왜 함께 개정하지 않나?
- 답변 : 이후 조례개정시 개정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규제완화 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거창군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외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등 모든 제한사항을 없애고, 민영주차장의 요금도 자율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되는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음
- 그리고, 주차장법 개정과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인 거창군주차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향후 이 조례도 개정하도록 요구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폐지이유

-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농지개량사업(경지정리) 주민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

### 나. 주요골자

-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촌근대화 촉진법 폐지되므로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진 현행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본 조례의 근거가 없어졌고, 새로운 농어촌 정비법에 경지정리에 대한 부담금등이 없어져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

- 관련조례인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도 개정되어야 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이 조례는 95년도부터 조례의 근거와 실효성이 없어졌는데, 왜 지금 폐지하나? 거창군의 자치법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나?
- 답변 : 도에서 일괄적인 정리기준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정비가 늦어졌음.
- 질의 : 지금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는 이 조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나?
- 답변 : 몽리민에 대한 사업비 부담도 없어졌고, 관련된 규정이 놓여준 정비법에 상세하게 있어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없음.
- 질의 :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는 왜 함께 개정하지 않나?
- 답변 :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폐지조례안은 기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임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거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농지개량조합법 제정으로 인해 이 법의 부칙규정으로 폐지되어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졌고,
- 본 조례의 주된 내용이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주민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대체되면서 주민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관련규정의 의미가 없어졌으며,
- 그 이외의 본 조례에 규정한 내용도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 이와 함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이와 관련된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도 관련법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 농어촌도로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손괴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권리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농어촌도로도 본 조례에 적용되도록 규정(안 제1조)
-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손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원인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명시(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농어촌 도로에도 본 조례를 적용하고,
- 부담금 선납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의 권리

남용의 우려를 줄이는 조례안로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이나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가?
- 답변 : 자동차 사고에 의한 대부분의 손괴자 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음.
- 질의 : 손괴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일이 없으면 단서조항을 개정할 이유가 없질 않는가?
- 답변 :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해서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질의 : 농어촌도로에도 본 조례를 적용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답변 : 농어촌 도로법에 근거가 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의 복구와 손괴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 이외의 농어촌도로에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및 손괴자부담금의 선납 예외규정으로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천재지변에 가까운 원인으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인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권리남용의 우려를 배제하려는 조례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합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 개별법(하천법, 산림법, 전염병예방법, 경범죄처벌법등)에 따라 처리가능한 일부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 관련 조례명 변경에 따른 관련용어를 수정

### 나. 주요골자

- 행위의 허가 및 제한규정 폐지(안 제6조)
- 허가취소 규정폐지(안 제7조)
- 권리양도의 제한규정 폐지(안 제8조)
- 입장거절 및 퇴장규정 폐지(안 제1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에서 규제나 제한사항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

정규제를 완화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은 있으나,

-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와는 거리가 있음.
- 조례내용상 규제적인 용어를 바꾸어서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함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군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몇 곳이나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 답변 : 관내에는 총 11개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으며, 마을에서 또는 지역 내 청년단체 등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질의 : 제13조 수수료 환불 단서규정을 없애는 것은 이용객들을 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 답변 :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 단서 조항이 없어졌는데, 수수료 반환규정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차후 보완을 한다고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의 각종 행위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있으나,
- 심사결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모든 행위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그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 또는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었으며,
- 폐지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안내하고 열거해 놓은 성격의 조항들이므로, 본 조례에서는 규제적인 성격의 용어인 허가, 제한 등의 표현은 완화하여 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유원지 내에서의 특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서의 조례를 개정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 본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환불 예외 조항의 삭제는, 관련규정의 삭제로 인해 함께 삭제되는 것이기는 하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원지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보완하기로 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완화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신고사항으로 완화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삭제
- 봉투공급에 관한 조항의 조문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에서 신고로 바꾸는 실질적인 자율경쟁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인 것으로 판단.
- 신고로 인한 판매소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인

지 심사필요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읍 중심지역과 변두리와의 판매소 분포는 어떤가?
- 답변 :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도심과 변두리가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음.
  
- 질의 : 쓰레기 봉투 판매마진은 얼마인가?
- 답변 : 평균 봉투가격의 9%임.
  
- 질의 : 판매소의 불균형 현상은 없겠는가?
- 답변 :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5. 토론요지

##### 가. 찬성

-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음.

#####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신청에 의해서 군수가 지정토록 한 조항을 자율에 의해 신고만 하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실질적인 자율경쟁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5월 29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199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가.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 중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승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도장치의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승계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판결로 본 조례의 관련조항 수정은 타당함.
- 본 조례 제22조 중 승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므로 제22조의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수정함이 합당할 것으로 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내용과 같이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 답변 :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동의.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제22조의 제목을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로 하고, 본문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안.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취득으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는 본 조례의 규정은 대법원의 1993. 5. 11선고 92누17211판결로 위법이라는 판례에 따라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이를 규정한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조항 중, 제2항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남은 제1항은 급수장치의 권리의무 귀속에 관한 규정만 남아있어, 이 조항 중 「처분」이라는 표현은 승계를 전제로 한 것임으로, 본 조항 본문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에 부수한다」로 바꾸고, 본 조항

의 제목도 「권리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급수장치의 권리의무」로 바꾸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본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제안되어,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5. 29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6. 10

다. 상정일자 : 제61회 임시회 제3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1999.6.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변경이유

○ 1967년 양곡지원사업으로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골 소류지(5필지 3,472m<sup>3</sup>)가 전  
환사업, 축사건립, 합천댐수몰 등으로 현지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 토지소유자와 수혜농민들간의 사용료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1993년부터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영농의욕을 고취  
코자 함

○토지매입현황

종 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예정금액	비 고
토지(5필지)	남하면 무릉리 735-1 외 4필지	임(3필지) 전(1필지) 답(1필지)	3,472m <sup>3</sup>	25,243천원	사실상 소류지

## 나. 주요골자

- 1967년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 설치
- 토지소유자와 수혜농민들간 매년 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관리해 왔으나
- 그 후 몽리수혜 면적이 줄어 현지 여건이 크게 변화
  - 소류지 설치 당시 수혜면적 55.1ha → 전전환, 축사건립, 합천댐수몰 등으로 수혜면적 9.9ha로 감소됨
- 사용료 지급 차질 초래로 1993년도부터 군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해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민원이 제기됨

## 3.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매입 요구된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 소류지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99당초예산에 25,243천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절차상 맞지 않으나,
- 본 토지는 1967년도 사업시행 당시 소류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취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 재산의 보존가치, 또는 공유재산 집단화를 초월하여 민원해소 측면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최영웅 위원)
  - °예정금액은 객관성이 있는 평가가격이었는지?
- 답변(재무과장)
  - °98. 8. 17 건설과에서 세한, 동국 감정사 등 2개 감정사에 의뢰하여 평균 평가가격임

○ 질의(강신봉 위원)

°예정가와 현실가와 차이가 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답변(재무과장)

°요구액이 평가가격 이상일 경우 매입이 불가하므로 협의취득토록 하겠음

○ 질의(오임수 위원)

°미등기 4필지는 특별조치법때 등기를 하지 않고 왜 방치해 두었으며 매입에 문제는 없는지?

○ 답변(재무과장)

°미등기 4필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유자를 공고한 후 남하면장의 사실 소유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입토록 할 계획임

## 5. 토론요지

○ 가. 찬성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절차상 맞지 않으나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오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음

○ 나. 반대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 2호에는 1건당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또한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요구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은 지난 제58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된 이후 남하면 무릉리 735-1 등 5필지 (3,472㎡)의 성척 소류지 편입부지를 매입할 사유가 발생하여 요구된 것으로서,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 남하면 무릉리 소재 성척 소류지는 1967년도 사업 시행당시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 취득이 되지 않고 양곡지원사업으로 소류지를 설치하여 토지 소유주와 몽리자간 매년 벼 7섬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전전환사업과 축사건립, 그리고 합천댐 수몰 등으로 당초 수혜 면적 55.1ha에서 9.9ha로 급격히 줄어 당초계약된 벼 7섬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약 6년 전인 1993년도부터 소류지 편입된 소유자들이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토지로,
-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재산의 보존가치성이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절차상에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미해결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심사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이를 원안대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매입할 5필지 가운데 “남하면 무릉리 752번지의 논 1필지는 정숙환 씨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4필지는 미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와 연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고 취득가격에 있어서도 객관성 있는 재산평가 가격에 의해 매입하도록 관계부서에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 8. 소수의견 요지

- 1967년도에 보상취득이 되지 않고 양곡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토지소유주와 몽리자간의 사용료 지급계약으로 경작하여 왔다고 하나, 관내 유사한 소류지는 없는지, 그리고 미등기 토지 4필지에 대한 매입은 제반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입해야 할 것이며, 절차상 맞지 않으나, 향후 시정토록 하고 본건은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타 읍·면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